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4-4-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제12조의 2 제2항에 의거 입시공정관리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본교 원로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총장은 행정과장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당해연도 원서접수기간 2개월 이전부터 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로 한다.

제4조(임무) 위원회는 본 대학교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입시부정방지 대책계획의 수립
2. 입시관리 업무의 감시
3. 입시 자체감사
4. 재·편입학 전형의 공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1.4.20)
5. 입학전형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개정 2011.4.20)
6. 입학전형 윤리 위반행위 여부 결정(신설 2011.4.20)
7. 기타 입학전형의 공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1.4.20)

제5조(전형위원 등의 제척·회피) ① 당해 전형위원 등의 자녀 및 친인척 관계(친족과 인척을 포함하여 4촌 이내)에 있는 자가 우리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전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척(除斥)·회피(回避)하여야 한다.(개정 2011.4.20)

② 제1항의 '전형위원 등'의 범위는 본 위원회 위원 및 우리 대학 입학전형 관련 문항출제, 면접평가, 서류평가 등의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입학사정관 및 직원을 포함한다.(개정 2011.4.20)

제6조(이의신청의 처리) 위원회는 우리 대학에서 실시되는 입학사정관전형을 포함한 입학

전형의 전 분야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담당한다.(개정 2011.4.20)

제7조(기타) 제5조 내지 제6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4.20)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